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1가단1271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4, 5, 8, 9항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19. 1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과 별지 목록 제6, 7항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19. 2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,928,1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- 나. 피고는 원고에게 15,928,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부동산 중 1/6지분, 별지 목록 제10, 11항 기재 부동산 중 1/1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2, 13항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- 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